

『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장세구 의원 외 4명

2. 제안이유

공작물(발전시설)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강화하여 주민들의 생활환경 및 영농환경을 보호하고, 태양광발전시설 난립 방지 등 정주여건을 향상 시키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공작물(발전시설)에 대한 허가기준 개정[별표27]

1) 태양광발전시설 이격거리 상향

가. 주요도로 : 200미터 이내 → 500미터 이내

나. 자연취락지구 및 주거밀집지역 : 200미터 → 500미터

※ 10호 미만의 주민이 거주하는 경우 : 50미터 거리 이격 후 주택수에
15미터를 곱한 거리 추가 이격 → 300미터 거리 이격 후 주택수에
20미터를 곱한 거리 추가 이격

2) 특정 건축물(축사, 작물재배사 등) 태양광발전시설 이격거리 적용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(붙임)

5. 검토의견

- 본 「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,
 - 공작물(발전시설)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강화하여 주민들의 생활환경 및 농업기반을 보호하고,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시설 건립을 방지하여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고자 발의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,
 -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태양광발전시설 이격거리가 △주요도로 200M에서 500M로 △10호 이상 주거밀집지역 200M에서 500M로 조정되었고, 축사·작물재배사·곤충사육사 등 농업시설건축물에 태양광발전시설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것임.
 - 이는 태양광 발전시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 설치됨에 따라 주민과 사업자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원만한 태양광발전사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격거리 기준을 조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.